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0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7.

발 의 자 : 한정애 · 허 영 · 이학영
윤후덕 · 서영석 · 이용선
김의겸 · 조인철 · 이인영
김 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·에너지·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,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.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지방공사·공단이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·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·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64조의2제6항

등).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⑥ 공사는 금융기관과 금융·보험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낙찰자 또는 수의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다.

1.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
2. 녹색금융·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)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를 하거나 수의계

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의2(회계처리의 원칙 등) ①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4조의2(회계처리의 원칙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공사는 금융기관과 금융·보험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다.</u> <u>1.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</u> <u>2. 녹색금융·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</u> <u>⑦ -----제6항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, 계약의 기준 및 절차,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